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ited States: IRS Issues New Model for Advance Pricing Agreement Applications](#)

[\(Bloomberg BNA TP report Vol.26, No.12, p.492\)](#)

미국: 과세당국의 정상가격사전협의 제도 신청을 위한 개정모델 발표

2017년 9월 26일 미국 과세당국은 납세자와 기관의 행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IRS의 정상가격사전협의(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 신청서 템플릿을 개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과세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APA 신청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기존 템플릿보다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납세자들이 개정 템플릿에 익숙해 지도록 돕기 위해 상세한 지침과 설명문을 함께 첨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지침서

현재 사무처리규정(Revenue Procedure) 2015-41에 따르면 기업들은 APA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30 October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APA는 과세 소득 배분에 적용될 가격을 정하고, 미국 과세당국과의 일방적 협정 또는 다른 국가의 조세 기관을 포함하는 양자 협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협정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간 지속됩니다.

지침서 개정 배경

미국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개정 APA 신청서 템플릿에 포함되는 항목이 보다 상세해진 이유는 2012년과 2014년에 발생한 Eaton Corporation (이하, "이튼")의 조세 특례 소송의 경우와 같이 APA 신청서의 주요 정보누락을 방지하려는 미국 과세당국의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장비 제조업체인 이튼은 2012년과 2014년에 신청한 APAs 템플릿에 자재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IRS로부터 2개의 APA에 대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26일 법원 재판의 판사인 Kathleen Kerrigan에 따르면 이러한 과실은 수입 절차에 있어 미미한 부주의적 실수며 APA 과정상 중대하지 않은 이슈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취소된 것은 IRS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개정 지침서

따라서 개정된 초안 템플릿에는 재무제표, 조정 확인 및 계약서의 조기해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용어, 정의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납세자의 정당성이 필요한 특정 옵션들을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APA 지침서는 IRS가 발표한 지침서 중 최초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가이드 라인 지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된 APA 신청서는 기존과 달리 많은 정보와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APA를 신청할지 여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India: Proposed country-by-country reporting, Mater fiile rules](#)

인도: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규정 초안

2017년 10월 6일, 인도 세무당국(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은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및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

Rules 10DA 는 제출기준, 제출기한, 제출규정 및 과정 등에 관련된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3CEBA 및 3CEBE 서식으로 구성됩니다.

제출기준: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모회사의 연결매출 **INR 50 억(약 866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기준** 특수관계자거래의 합계가 **INR 5 억(약 86 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기준** 특수관계자 무형자산거래 규모(매입, 판매, 자산이전, 사용 등)가 **INR 1 억(약 17 억원)**를 초과하는 법인

상기 기준 모두에 부합한 경우에만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입니다.

제출기한:

- 최초 사업연도(2016-2017 사업연도)의 경우 2018 년 3 월 31 일까지. 이후 사업연도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까지 제출

통합기업보고서 서식:

3CEBA: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A 파트와 B 파트로 구분됩니다.

- A 파트의 경우 제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회사의 해외특수관계자가 인도에 소재할 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회사명, 인도에 소재하는 법인의 수, 인도소재 특수관계법인의 회사명 및 주소 등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 파트 B 의 경우 상기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준에 부합하는 법인만이 작성대상입니다.

3CEBE: 이 서식은 2 개 이상의 모회사의 특수관계회사가 인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작성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종 모회사가 특정법인을 지정하여 대표로 서식을 제출합니다(최종모회사 혹은 지정된 해외법인 모두 해당 서식 작성가능).

1 개 특수관계법인만이 인도에 소재하는 경우, 3CEBE 서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3CEBA 서식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Notification 및 3CEBE 서식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2016-17 사업연도의 경우 2018 년 3 월 1 일까지).

Rules 10DA 와 BEPS Action 13 권고안과의 주요 차이점

Rules 10DA 에 명시된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규정은 BEPS Action 13 권고안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Action Plan 13	Rule 10DA
그룹 내 법인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기술하는 기능분석	그룹의 매출, 자산 및 수익의 최소 10% 를 차지하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 위험 및 자산분석

비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내역을 포함한 그룹의 자금조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자금거래규모 기준, 상위 10개 비 특수관계자의 이름, 주소를 포함한 그룹의 자금거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
------------------------------------------------	------------------------------------------------------------

이외에도 Rule 10DA 는 통합기업보고서에 그룹의 무형자산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EPS Action 13 권고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

국가별보고서

Rule 10DB 은 인도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일반적으로 BEPS Action 13 에 따르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준:

- **직전 사업연도 연결매출 INR 550 억(약 9,500 억원)**을 초과하는 모회사(OECD 에서 명시한 기준과 유사)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 이전까지 제출

3CEBB 서식:

인도에 소재한 모든 해외특수관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인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모회사로부터 지정된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이하, "Alternate Reporting Entity")인지 여부
- 최종 모회사 혹은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상세정보 및 해당 법인들이 소재하는 지역

사전신고(notification)는 CbCR 제출기한으로부터 6 일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CEBC 서식 – 국가별 보고서 서식:

인도에 소재하는 모든 모회사 및 Alternate Reporting Entity 는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인도에 1 개 특수관계법인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 법인이 인도 세무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에 2 개 이상의 특수관계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가 지정한 특정법인이 대표로 제출기간 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법인이 지정되었는지는 3CEBD 서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기한은 명시되지 않음).

KPMG 의견

- 통합기업보고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제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출기준(연결매출 INR 50 억 (약 866 억원) 및 특수관계자거래규모 INR 5 억(약 86 억원) / 1 억(약 17 억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를 소재한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다국적기업은 모회사 국가가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인도 규정에 따르면, 첫 사업연도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는 2018 년 3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보고서의 제출기한 일은 동일합니다.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이 한달 정도 남았으며, 규정이 10 월말 혹은 11 월초 안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도 세무당국은 제출기한을 변경해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제출기한으로부터 6 일전에 사전신고를 제공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
- 국가별보고서의 부분인 3CEBC(B 파트)부분은 OECD 에서 권고한 국가별보고서 서식과 약간 상이합니다. OECD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관리 및 지원서비스' 부분은 3CEBC 서식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간의 정보교환협정을 고려하면, 인도 세무당국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차이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일반적으로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제출연도를 따르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출연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 세무당국은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Poland: Decree on information to include i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폴란드: 이전가격보고서에 포함될 정보에 관한 법령

2017년 9월 18일 폴란드 재무부장관은 10월 3일부터 발효될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안에 따른 이전가격보고서 포함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법령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역할

개정 세법안은 이전가격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공표하기 위해 제9a조 제8항의 공공재정문제 담당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법령의 기본 요소

2017년 9월 18일 발표된 법령은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경제분석, 통합기업보고서 등)와 관련해 보고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표된 법령이 불명확하고 단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인해, 신규 법령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법령에는 개별기업보고서, 경제분석 및 통합기업보고서에 요구되는 정보인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 기능 프로파일(functional profile) 및 부가가치사슬(value-added chain) 등 법적인 용어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능 분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개별기업보고서 및 경제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더불어, 개정된 법령은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특히 무형자산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기업보고서에 특수관계회사간 적용하는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수많은 추가적인 정보들은 제공해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Back to to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